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5조(주민등록증의 발급)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명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8. 3. ~ 2026. 8. 18.(15일간)
3. 발급기간: 2026. 8. 1. ~ 2027. 7. 31.(12개월)
4. 대 상 자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주 소	공고사유
1	정○진	2009.07.01.	파주시 월롱면 엘씨디로 ○○○, ○○○○	수취인불명

5. 신청장소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실거주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)

6. 발급안내

가.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나.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
- 1)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
- 2)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·이장의 확인
- 3)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
다. 준비해야 할 사진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(3.5cmX4.5cm)

※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.

라.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.

※ 신청인이 우편 수령을 원할 시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 수령 가능

마.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7. 문의전화: 월롱면 행정복지센터(031-940-8562)

2026. 8. 3.

월 롱 면

